

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-19호

2021년 전북지방우정청 우정9급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의거, 2021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8일
전북지방우정청장

1. 시험일시 : 2021. 3. 20.(토) 10:00~11:00

※ 입실시간 : 09:20까지 (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
2. 시험장소 : 전라북도 소재 4개 시험장

※ 응시번호별 시험장소는 「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」를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 전북지방우정청 우정9급(계리) 필기시험 장소 】

구 분	응시번호	학교(시험장)	시험장 소재지
일반(전북)	700001~700300	전주공업 고등학교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101 (버스 44, 101, 103-1, 337, 381, 383, 385, 400, 420 등 전주공고 정류장 하차)
일반(어청도)	770001~770026		
장애인(전북)	780001~780019		
일반(전북)	700301~700660	전주솔빛중학교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6길 33 (버스 19, 62, 104, 131, 149, 354, 554, 644 등 전라고 정류장 하차)
일반(전북)	700661~700975	전주평화중학교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74 (버스 101, 104, 309, 375, 380 등 평화그린2차아파트정류장하차)

구 분	시험장	시험장 소재지
코로나19 자가격리자	전북지방우정청	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(버스 22, 25, 26, 69, 119, 121, 354, 355, 385, 511, 513, 515, 522 등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정류장 하차)

【 전북지방우정청 우정9급(계리) 필기시험 시험장 약도 】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주공업고등학교</p>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주솔빛중학교</p> 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주평화중학교</p>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북지방우정청</p> 

3. 응시자 준수사항

【 일반사항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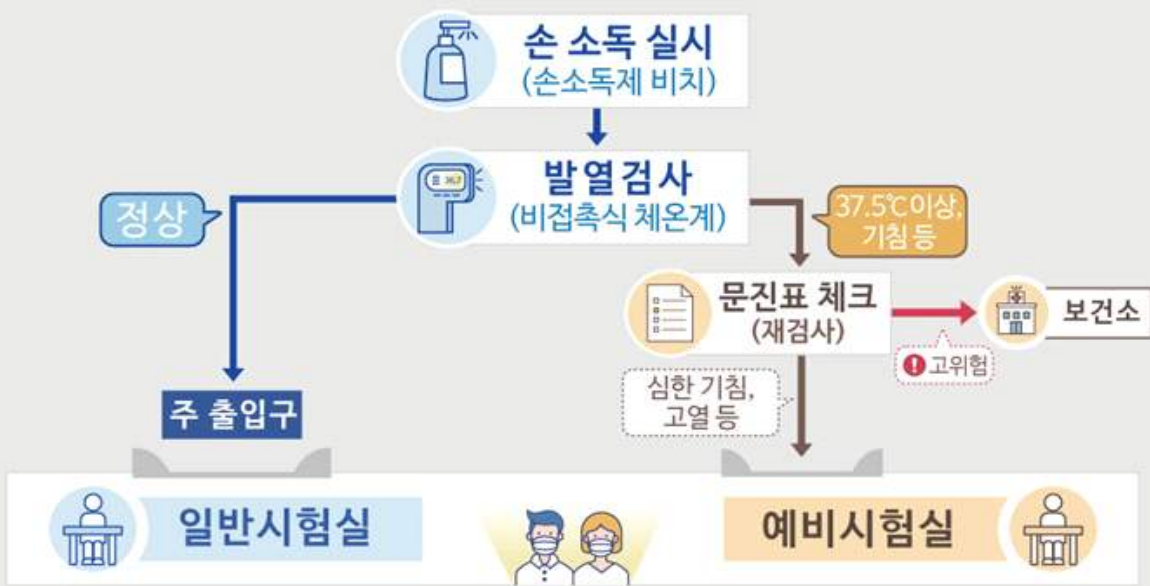
가. 시험당일 **09:20**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 (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
※ 손 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[코로나 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](붙임 1)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, 손소독 및 발열검사,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◆ (출입구 관리)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, 수험생, 시험감독관 등 시험장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 및 발열검사(비접촉식 체온계) 실시
 - 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감염의심여지(발열 37.5℃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)가 있는 수험생은 예비시험실에서 분리 응시
 - 시험실의 출입문·창문 등을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를 할 예정이므로 각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Ⅰ 수험생 시험장 출입 및 발열검사 절차 Ⅰ



- 다.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 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
- 라.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,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 - ※ 확진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방법은 【8.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】 참고
- 마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시험장 내 외부차량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차량탑승 수험생은 정문 하차 후 개별 출입)
- 바.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)을 소지해야 합니다.
- 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 수첩 등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 - ※ 응시표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(<http://kpost.jinhakapply.com>)→응시표 출력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- 사.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,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(득점 불인정 등)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아. 시험시간 중 통신,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(휴대전화, 태블릿PC, 스마트워치, 이어폰, 스마트밴드, 전자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, 디지털 카메라, MP3 플레이어, DMB 플레이어 등)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.
- 자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,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·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,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
- 차.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불펜 똑딱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 등)는 자제하여 주시고,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카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


 -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,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통신,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 등)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타. 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파.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【 답안지 기재 및 표기 】

- 가. 득점은 OCR스캐너 판독기 결과에 따라 산출하며,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「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」(사인펜에 “컴퓨터용” 이라고 표시)을 사용하여 반드시 <보기>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 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열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

※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

- 나.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 간의 일치 여부, 문제 누락·과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라.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마.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**하나의 답안**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 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 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며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.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 -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- 바.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(■ ■ ■ ■ ■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
【 부정행위 등 금지 】
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7호 위반행위

-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,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 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 -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

다.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(기재)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 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등 안내

가. 필기시험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안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정답가안 공개: 2021. 3. 20.(토) 18:00
-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: 2021. 3. 20.(토) 18:00 ~ 3. 24.(수) 18:00
 - ※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(<https://www.koreapost.go.kr>)
- 최종정답 공개: 2021. 3. 31.(수) 18:00

5. 가산점 비율 확인 및 표기 안내

-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1. 3. 19.)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가산점 종류 및 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,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)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취업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(지)청, 보훈과, 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의 여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1. 3. 19.)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※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☎ 044-202-3259
- 시험과목(3과목)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(40점 미만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

가.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비율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

나. 취업지원대상자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을 가산합니다.
- 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- ※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- 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☎1577-0606)에 확인

다. 의사상자

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5% 또는 3%)을 가산하며,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.

※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
※ 의사상자 등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(☎044-202-3259)에 확인

6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가.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post.go.kr/jb>)와 원서접수 시스템(<http://kpost.jinhakapply.com>)에 게시합니다.

- 합격자 발표일: 2021. 4. 27.(화)

7.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안내

가.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안내

-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즉각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정밀검진을 받으시기 바라며,

- 보건 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도 단순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최근 14일 이내 해외 국가를 방문한 경우 출입국 이력을 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에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필요할 경우 방역·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·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자진신고 방법: 전북지방우정청(인력계획과 담당 및 당직장)에 유선 신고

※ 자진신고 기간: 3. 12.(금) ~ 3. 19.(금)

- 평일 주간(18시 이전) : ☎063-240-3742 (전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)

- 평일 야간(18시 이후) 및 주말 : ☎063-240-3671 (전북지방우정청 당직실)

8.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

가.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

- ① **확진판정을 받는 즉시 전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에 연락**
 - 수험생이 **확진판정**을 받은 경우, **즉시 전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에 유선(주간 063-240-3742, 야간 063-240-3671)으로 확진사실을 알리고**, 당사자 본인이 **지자체 담당자(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)에게도 시험응시사실을 알림**
- ② **지역별로 사전 지정된 시험응시 전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**
 -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와 지자체 병상 배정 담당자에게 **본인의 응시 지역에 사전 지정된 시험응시 전담시설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**
- ③ **해당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**
 - 제출방법: 이메일(mama7jong@korea.kr)로 제출
- ④ **시험당일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시험감독관이 해당 시설로 방문하여 시험 진행**

나.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

- ① **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즉시 전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에 연락**
 - 수험생이 **자가격리 통보**를 받은 경우, **즉시 전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에 유선(주간 063-240-3742, 야간 063-240-3671)으로 자가격리 사실을 알리고**, 당사자 본인이 **지자체 담당자(보건소 자가격리 담당자)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림**
- ② **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 제출**
 - 제출방법: 이메일(mama7jong@korea.kr)로 제출
- ③ **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후, 별도 지정 장소에서 시험 진행**
 - 시험응시를 위한 **임시 외출 허가**를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
 - 시험장은 **전북지방우정청(10층)**이며, 시험 당일 시험장까지 자차 등을 이용하여 개별 이동

【붙임 1】

〈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〉

- ▼ 시험장 방역 및 수험생 위생관리를 위해 시험실은 08:00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.
- ▼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.
 - ※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
 - ※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
- ▼ 발열(37.5도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장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대기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1.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개인 필기구, 음료수를 개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- ▼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,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.
- ▼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,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,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(코입 노출 금지)해야 하며,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- ▼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